성주생활체육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 ○ 성주생활체육시설을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 및 운영성과를 극대화고자 함.

2. 주요내용
 ○ 시설현황

시 설 명	위 치	시 설 내 용
성주생활 체육시설	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516번지 일원, 대황리 86-1번지 일원	테니스장 5면, 정구장 3면, 족구장2면(실내1면 포함), 게이트볼장 4면 관리사 2동, 그라운드골프장 1면, 파크골프장 1면

 ○ 위탁기간 : 2016. 1. 1. ~ 2018. 12. 31.(3년)
 ○ 위탁사무 :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업무
 ○ 사용료 징수 : 조례규정에 따르며, 징수된 사용료는 시설운영비 등으로 사용
 ○ 예산지원 : 예산에 따라 운영비 등 지원
 - 2015년 기준 23,000천원

3. 참고사항
 ○ 민간위탁 근거 법령
 -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
 -「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」 제24조
 -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
○ 위치도



성산리 1516번지 일원(테니스장, 족구장, 게이트볼장)



대황리 86-7번지 일원(그라운드 및 파크골프장)